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8754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전○○, 이○○
피 고 1.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
2. ○○시장
3. ○○광역시 ○○구청장
참가행정청 ○○○○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¹⁾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1. 28.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2014. 12. 29.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법인이다.

나. ○○청은 2019년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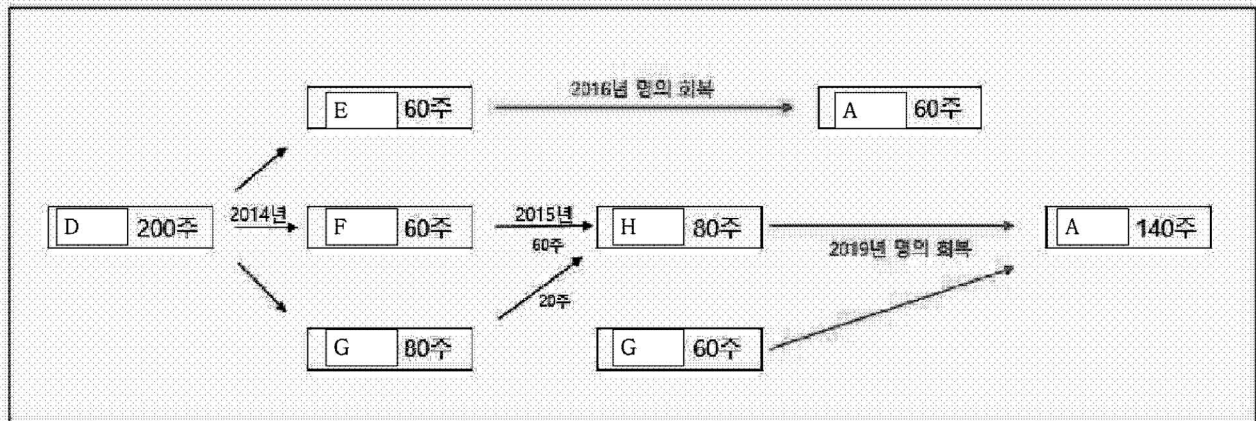
1) B

D이 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2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E과 F가 2014년에 각 60주, G이 80주를 각 D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H이 2015년에 F의 주식 전부와 G의 주식 20주를 양수하였다. 2016년에는 원고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사

1) 원고는 피고 ○○시장의 부과처분일을 2022. 1. 10.로,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부과처분일을 2022. 6. 2.로,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부과세액은 932,662,160원(취득세 852,620,800원 + 농어촌특별세 80,041,360원, 가산세 포함)으로 하여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을가 제1호증의1, 2, 을가 제2호증의1 내지 5,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시장의 부과처분일은 2022. 3. 3.,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부과처분일은 2021. 10. 8.,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부과세액은 891,369,480원(취득세 821,429,750원 + 농어촌특별세 69,939,730원, 가산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 각 부과처분일과 부과세액을 별지1과 같이 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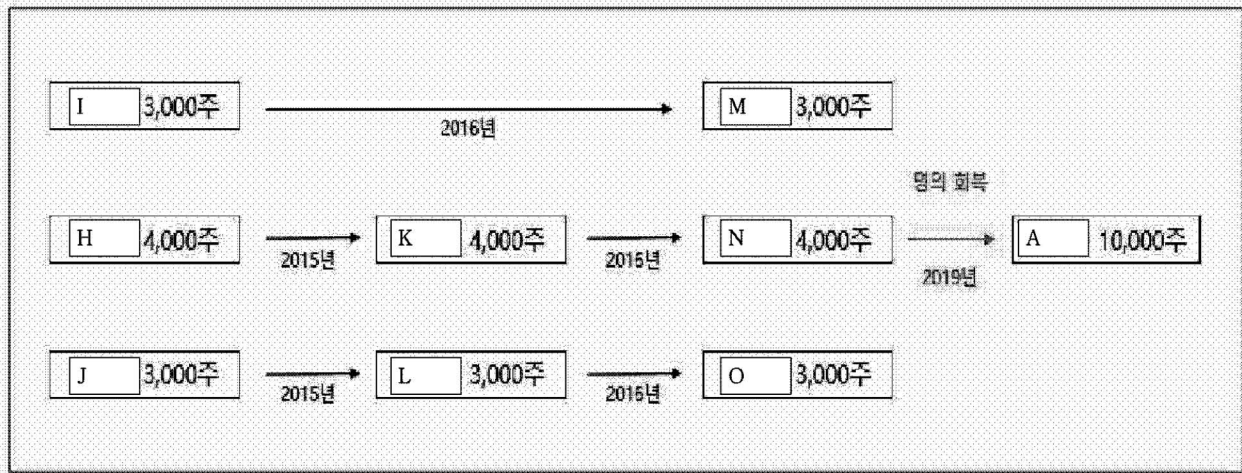


유로 E의 주식 60주 명의를 이전받았고, 2019년에는 원고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사유로 H의 주식 80주와 G의 주식 60주를 각 이전받았다. B의 주주명의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C

회사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가운데 I이 3,000주, H이 4,000주, J이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에 H의 주식 전부를 K이, J의 주식 전부를 L이 각 양수하였다. 2016년에는 I의 주식 전부를 M이, K의 주식 전부를 N이, L의 주식 전부를 O가 각 양수하였고, 2019년에는 원고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을 사유로 M, N, O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다. C의 주주명의 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라. 피고 ○○시장은 2022. 3. 3. P가 소유한 ○○시 Q 토지에 관하여 P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구법 표시를 생략한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57,907,7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 ○○시장은 2022. 5. 13. P가 소유한 ○○시 R, S T 각 단지 토지, 건물에 관하여 P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63,289,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바.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2021. 10. 8. B가 소유한 ○○ ○○구 U 외 4필지 토지에 관하여 B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91,369,4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 설립 시부터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한 1인 주



주였는데, 처음부터 직원 등에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9년경 다시 원고 명의로 전환하였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손쉽게 정보 제공받아 원고가 법인설립 시부터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였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 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의 실질주주가 명의상의 주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소유 명의를 개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



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2161 판결 참조).

2)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시부터 실질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래 1), 2)], 피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시부터 실질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 처분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아래 3)],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또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들은 2014년에 설립되었는데, 2019년에 원고 명의로 주식 전부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에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었고(2016년에 B의 주식 60주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요건에는 미달하였다), 그들 사이에 주식이 수차례 전전양도되기도 했다. 이 사건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에 비로소 과점주주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시부터 2019년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 중 적어도 발행주식의 5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회사들 설립 시부터 원고가 실질적 과점주주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 설립 당시 주금 전부를 납입한 계좌내역, 원고와 차명주주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서, 원고와 차명주주의 관계 또는 차명주주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원고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 자료 등 원고가 법인설립 시부터 실질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이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시부터 실질과점주주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2019년 주식변동의 원인이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청이 제공한 2019년 과점주주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는 원고가 언제부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설립 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1. 6. 23. B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회 요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21. 7. 1.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주주 \ 내용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수정신고에 따른 세무서 결정여부 및 일자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인정시점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
원고	결정 부	확인신청 미신청으로 인정여부 미검토	무신고
H	결정 부	상동	무신고
G	결정 부	상동	무신고

또 피고 ○○광역시 ○○구청장의 '2021년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위 피고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통하여 관내 부동산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추출한 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이 제공하는 과점주주 연계자료를 조회하여 과점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구



체적·개별적인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지분비율 변동 사항 외에 원고가 법인 설립 시부터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법인 설립 시부터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사 설립 시부터 실질적 과점주주였음이 불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4

판사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4

별지1

부과처분 내역

순번	피고	부과일	세목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합계(원)
1	○○시장	2022. 3. 3.	본세	240,735,670	24,073,560	264,809,230
			가산세	89,012,000	4,086,480	93,098,480
2	○○시장	2022. 5. 13.	본세	633,623,980	63,362,390	696,986,370
			가산세	253,766,390	12,536,880	266,303,270
3	○○광역시 ○○구청장	2021. 10. 8.	본세	610,161,380	61,016,130	671,177,510
			가산세	211,268,370	8,923,600	220,191,970
						2,212,566,830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 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